



2027학년도 전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입학 할 때보다 졸업 할 때
더 빛나는 인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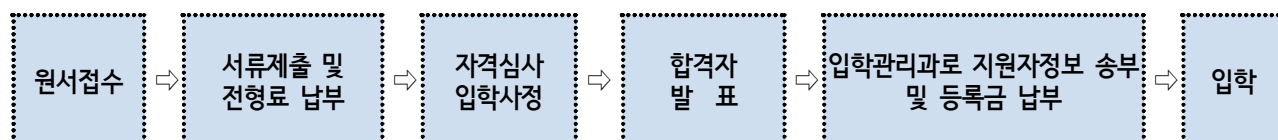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I 전 형 일 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및 전형료 납부	2026.7.6.(월) ~ 2026.7.10.(금)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은 최대 6회 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은 무효로 함) 전(全)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사항 미적용 1. 서류제출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3층 행정실 (우)54150 ※ 지원자/대리인 직접 제출 또는 우편송부 (우편송부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2. 전형료 납부 : 50,000원 계좌송금 (전북은행 567-13-0303677 국립군산대학교) ※ 반드시 지원자 이름으로 이체해야 확인 가능함
자 격 심 사	2026.7.13.(월)~ 2026.7.17.(금)	서류심사(100%)를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 등을 참고하여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정한 성적기준 점수를 반영하고 최종 선발은 지원학과에서 진행 .
합격자 발표	2026.7.24.(금)	국제교류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금 납부	2027.1월중	전북은행, 국민은행 각 지점. 추후 홈페이지 공고 ※ 본교 입학관리과에서 지원자에게 추가 안내 예정

II 입 학 절 차



III 지 원 자 격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의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자격요건

구 분	지 원 자 격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해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해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해외재학기간</td><td>·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td></tr> <tr> <td>해외체류기간</td><td>·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td></tr> <tr> <td>해외근무자 재직기간</td><td>·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구분	내용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2.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등

□ 기본 학력요건 및 자격요건

구 분	지 원 자 격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 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 간의 차이 년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 입학허용기간 : 재외국민은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유아원, 유치원,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는 불인정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국내 검정고시 인정) ※ 입학허용기간 :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결혼이주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으로 아래 어학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소지자 권장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관한 자격요건은 위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요건과 동일함

3. 자격요건 주의사항

○ 영주교포 자녀

- 부모 및 지원자의 국적이 모두 한국이어야 함(주민등록 이민말소 완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경우 대사관과 영사관의 확인으로 인정

○ 해외 파견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 파견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미인정)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외국학교 소재지 및 인정 기준

- 외국학교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학교)이어야 함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제외

○ 재학기간 인정 기준

- 재학기간 : 외국의 고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에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
- 기간산정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지 못했다면 고교과정 1년 이상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인정
- 외국소재 유학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수학기간으로 미인정
-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12년 기간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함(대학과정을 고교과정으로 인정)
-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과정에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미인정
- 학제가 다른 국가로 신·편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국내수학기간과 외국수학기간이 중복된 경우,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 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 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
- 해외파견근무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 현지법인, 자영업자, 해외취업자는 외국근무기간(재직 및 경력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 기간), 교포는 영주기간, 외국유학·연수자는 외국유학·연수기간, 선교사는 해외 파송기간 내에서 자녀들의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인정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누락	A	A	A	A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4-2로 G2-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거주(체류)기간 산정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거주(체류)기간, 학력,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 유의사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인정하지 않음.

IV 모집단위 및 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신입	편입	인원	
					입학정원 2%이내 재외국민	정원제한 없는 재외국민
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계열	법경찰학과	○	○	36명	36명
		행정학과	○	○		
		상담심리학과	○	○		
AI·첨단대학	공학계열	이차전지·에너지학과	○	○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	○	○		
		스마트시티학과	○	○		
	자연과학계열	바이오헬스학과	○	○		

※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국제교류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V 등록금

계열	등록금	해당학과
인문·사회	1,659,000	법경찰학과, 행정학과, 상담심리학과
공학	2,119,000	이차전지·에너지학과,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자연과학	1,978,000	바이오헬스학과

※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등록금 문의: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과 063-469-4064)

VI 장학금

※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이므로 내국인 장학금 대상자임.

※ 내국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과로 문의 (전화: 063-469-4011~4013)

VII 제 출 서 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정원 제한없는 재외국민 등	
	영주교포 자 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 녀	해외근무 상 사 자 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자녀	유치과학 자·교수 자 녀	현지법인· 자영업자 해외취업 자 자녀	전교육과정 이 수 자 (결혼이주민 포함)	북한이탈 주 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수학기간 기록표 (본교 서식)	○	○	○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초·중·고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	○	○	○	○	-	-
기본증명서(본인)	-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학생)	○ (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영주권사본	○ (부·모·학생)	-	-	-	-	-	-	-
보호자 재직증명서 (국내본사발행, 해외파견내용 기재) ※해외 발령일 및 귀임발령 (예정)일 기재할 것	-	○	○	○	○	해당자	-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소재국 한국영사관발행)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소재국 지정 정부기관 발행)	○	○	○	○	○	○	○	-
내국인영업허가에 준하는 당해국 발행 사업자등록증 (해당자)	-	-	-	-	-	○	-	-
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승인)서	-	-	○	-	-	-	-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서	-	-	-	-	○	-	-	-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	-	-	-	-	-	-	-
해당국발행 사업자등록증 (해당자만 제출)	-	-	-	-	-	해당자	-	-
포트폴리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음악과 지원자만 제출 (PDF 및 MP4 파일로 제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발행)	-	-	-	-	-	-	-	○
학력인정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급),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	-	-	-	○

※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포트폴리오는 컴퓨터 파일로 제출)

※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편입생의 경우 대학재학(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출신 대학장 추천서 추가 제출

VIII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

1. 전형요소

모집단위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서류평가		
재외국민	100%	100점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2. 반영점수

- 국내 고등학교 중 1~5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A+, A, A-)를 사용하는 학교 졸업(예정)자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단위 수가 없는 경우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연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연 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단위 수가 없는 경우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연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연 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 성적별 등급 점수표

취득성적 (등급/점수)	A+	A, A-	B+	B, B-	C+	C, C-	D+	D, D-	E, F
	97이상	96.9~90.0	89.9~87.0	86.9~80.0	79.9~77.0	76.9~70.0	69.9~67.0	66.9~60.0	60미만
환산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제교류교육원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IX 기 타 사 항

□ 학생생활관 (2026년도 정기 개관 2인실 기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http://www.kunsan.ac.kr/dormi>

학기	생활관구분	관리비(원)	식비(원)	합계(원)
1학기	BTL 2차 (황룡관, 나래관)	749,300	554,400	1,303,700
	BTL 1차(누리관) 직영(동백, 모란, 매화, 석류)	664,200		1,218,600
2학기	BTL 2차 (황룡관, 나래관)	702,500	533,700	1,236,200
	BTL 1차(누리관) 직영(동백, 모란, 매화, 석류)	622,700		1,156,400

※ [식당 운영제도] 평일의무식 5일(월~금) 3식(조식, 중식, 석식) 운영, 주말의무식은 선택형 (*식사자는 별도 추가 비용 발생)으로 시행하며, 일정 비율 이하로 선택할 경우 주말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함

※ “주말의무식[2일(토,일), 2식(중식, 석식)]”을 선택할 경우, 1학기 160,000원, 2학기 140,000원 추가 비용 납부

※ 1인실은 공실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추가요금 발생

□ 입학관련 문의처

- 국립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3층 행정실
- 연락처 : +82-63-469-4936 (재외국민입학 담당자)
- 이메일 : inter_adm@kunsan.ac.kr

- 붙임 1. 입학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4. 수학기간 기록표 양식 1부